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92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 박정하・박성민・주진우

진종오 • 한지아 • 김위상

이인선 · 김승수 · 신성범

김용태 · 최은석 · 장동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 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 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후 단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진료) ① (생 략)	제42조(진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	②		
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		
	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		
	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